

대구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30988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309888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10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배동천

변론종결 2021. 11. 3.

판결선고 2021. 11. 2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10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C이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31.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869,2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로 감축되었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권준범, 판사 장래아